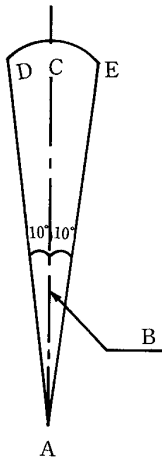


공기총자연식사격장의 구조·설비 기준(제2조제2항 관련)

구분		구조·설비
사좌		1. 사격선이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직선일 것 2. 사대는 폭과 길이가 각각 80센티미터 이상일 것 3. 사대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을 것 4. 사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일 것
사격선과 표적간	표적까지의 거리	사격선과 표적의 거리는 10미터 이상일 것
	표적까지의 지면	사격선부터 표적까지의 지면은 탄알이 튀어나갈 위험이 없을 것
표적		1. 표적은 각 사대와 바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을 것 2. 표적테는 탄알이 튀어나갈 위험이 없도록 되어 있을 것
탄알받이		표적 후방에 토사 등으로 된 탄알받이가 있을 것
보유부지		1. 별도에 표시된 범위의 위험구역을 포함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을 것 2. 발사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설비 또는 자연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준은 제1호의 기준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. 3. 위험구역 중 발사탄이 빈번히 통과하는 부분에 전선 등의 가설물이 없을 것
조명설비		1. 야간에 사용하는 사격장에는 조명설비가 있을 것 2. 조명설비는 탄알에 의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것
그 밖의 사항		1. 사격장의 주위에는 경계울타리, 경계벽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가 있을 것 2. 총을 손질할 장소가 있을 것 3. 관람석은 사좌의 후방에 있을 것

[별표 13의 별도]



A	사대 양끝선의 중심
B	표적의 중심
AC	탄자 최대 도달거리
활태상 DC	A를 중심으로 하여 AC를 반경으로 한 활태상
부채형 ADE	위험구역
사격장의 위험구역은 그림에 표시된 각 사대의 위험 구역 전부를 포괄하는 구역으로 한다.	